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42호 2016. 01. 1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 공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24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27호 2016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 3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29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 3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30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 37

⇒ 뒷면 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32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3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49호 공시송달 공고 -----	4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5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51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54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59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 - 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단봉로153번안길 35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 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6-01-0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지구 50블럭 5로트(왕길동)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53번안길 35 (왕길동)	2009-09-22	단봉로15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84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276번길 36-2 (대곡동)	2013-07-30	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2,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84-1, 286-3, 285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276번길 36-4 (대곡동)	2013-07-30	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2,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86-1, 287, 286-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276번길 36-5 (대곡동)	2013-07-30	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2,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392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53번길 7 (가좌동)	2009-09-22	보도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492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73번길 19-1 (가좌동)	2015-11-13	보도진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491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73번길 21 (가좌동)	2015-11-13	보도진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518, 173-490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73번길 25 (가좌동)	2015-11-13	보도진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519, 173-489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73번길 27 (가좌동)	2015-11-13	보도진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89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2번안길 12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01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안길 9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63-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138번길 17 (연희동)	2012-03-30	청라라임로의 시작점에서 1,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 - 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6. 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대곡로276번길 42-21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대곡동 287	대곡로276번길 42-21	2015.12.30.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 - 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1. 0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 번호 : 제2016 - 01호
나. 허가연월일 : 2016. 01. 05.
2. 점용·사용의 목적 : 경작
3. 점용·사용의 장소 : 인천 서구 금곡동 684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4,145m²
나. 기 간 : 2016. 01. 01. ~ 2016. 12. 31. (1년)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가. 성 명 : 김**
나. 주 소 : 인천 남동구 은봉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 - 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서구 공촌동 275-6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소로	3	20	8	국지 도로	293	공촌동275	중로2-39	일반 도로	공촌동	2005.4.1	
변경	중로	3	701	8~12	국지 도로	293	공촌동275-6	중로2-39	일반 도로	공촌동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20	중로3-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일부폭원 확장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 폭원(B) = 8.0m → 12.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내 차도폭 부족에 따른 통행 불편초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차로환경을 조성하여 통학 학생의 이용편의를 위함.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 - 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2. 위 치 : 서구 오류동 395-79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01	8	국지 도로	192.9	오류동395-79	오류동 산182-4	일반 도로	-	-	-

○ 도로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2-101	○ 신설 - 연장(L) : 192.9m, 폭(B) : 8m	○ 협소한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 공용중인 도로와의 연계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대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2016 - 1호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보 건 소 장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4년도 인천시에서 남동구 종합감사 결과 보건분야 개선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등 징수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로 조례명 변경
- 제증명 중 「지역보건법」에 따른 서구 보건소에서 발급하지 않는 제증명 삭제
- 유료예방 접종에 대한 금액 명시

3. 의견 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014) 또는 Fax (560-2800)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전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2014년도 인천시에서 남동구 종합감사 결과 보건분야 개선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등 징수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로 조례명 변경
- **제증명 중 「지역보건법」에 따른 서구 보건소에서** 발급하지 않는 제증명 삭제
- 유료예방 접종에 대한 금액 명시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3. “기타수가”란 법에서 정한 비급여 및 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약가) ①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전년도 최근 구매한 단가에 500원을 더한 가격으로 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수가 및 수수료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6조(기타수가) 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을 따른다.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의 보건기관단가 100분의 70으로 산정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제7조(수수료 등) ①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 없이** 보건소의 건강보험 1회 방문당 수가 중 본인부담액 만을 징수한다. 다만, 본인의 요구에 의해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의 수가기준액표 중 검사료 산정 **지침을 따른다.**

②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징수하지 아니하고, 보건소의 건강보험 1회 방문당 수가 중 본인부담액만 징수한다.

③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을 따른다.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는 별표 2를 따른다.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①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한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의 진료
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중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
7.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및 예방접종으로 법

제41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며, B형간염 예방접종은 제외

8.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3자녀 이상 가족 중 1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사업

② 보건소장은 타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 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제9조(납부 및 정산) 진료비 및 수수료는 선납으로 한다.

제10조(추가징수) **허위사실로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람은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타수가

종목	기준	수수료	비고
치면열구전색 (치아홈메우기)	1치아당	5,000원	건강보험대상(제1,2대구치) 치아제외
불소도포	전체치아	5,000원	
유료접종(B형간염)	성인	유료접종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에 500원을 더한 가격	십원단위는 절사

[별표2]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일반진단서	1통	500원	
2. 특별진단서(요양용)	“	2,000원	
3. 기발급 증명서 재발급	“	500원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1,500원	
5.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	300원	

관계법령 발췌

관련조례 ▶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조례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5.22.>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례 ▶ 별표2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500원을 내야 한다.

【참고사항1】

※ 비급여사항으로 조례에 정함

[별표1] 기타수가

현 행		개정(안)	
종목	수수료	구 분	요율액
치석제거술	30,000원	삭제	2013년도 치석제거술보험화 (급여)에 따라 삭제
치면열구전색	5,000원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5,000원
불소도포	5,000원	불소도포	5,000원
		유료집중(B형간염)	유료집중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에 500원을더한 가격(십원단위절사)
골밀도 검사	15,000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진 료기초코드변경	건강보험요양 급여기준의 70%, 매년 고시가에 따라 변동함

☞ 개정사유

- 치석제거술은 2013년부터 보험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삭제하고자 함.
- 골밀도 검사는 허리,고관절2부위로 총 3부위로 개정전 정액제로 15,000원이었으나, 매년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이 바뀜에 따라 개정후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70%로 매년 고시가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검사항목	분류번호	의료수가	건강보험요양 급여 기준70%	2015년 금액 (십원단위 절사)	기존	변경후
골밀도검사	다334가(2)	38,820원	27,174원	27,100원 (27,174원)	15,000원	27,100원

[별표2]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

현행		개정(안)	
구분	수수료	구분	요율액
1. 근로자 건강진단서	500원	1. 일반진단서 2. 특별진단서 3. 기발급 증명서 재발급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5.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500원 2,000원 500원 1,500원 300원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500원		
3. 일반진단서	500원		
4. 특별진단서(요양용)	2,000원		
5. 사체검안서	5,000원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2,000원		
7. 사망진단서	1,500원		
8.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500원		
9.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300원		
10.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500원		
11.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300원		

☞ 개정사유

구분	기준	수수료	근거	변경후
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일반건강진단서로 같음하고 있음	삭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500원	공무원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명시된 의료법 제3조2항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됨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함)	삭제
3. 일반진단서	1통	500원	-	유지
4.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	유지
5.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보건소에서는 취급하지않고 병원에서만 발급	삭제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보건소에서는 취급하지않고 병원에서만 발급	삭제
7. 사망진단서	1통	1,500원	보건소에서는 취급하지않고 병원에서만 발급	삭제
8.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보건소에서는 취급하지않고 병원에서만 발급	삭제
9.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500원	-	유지
10.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통	1,500원	식품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유지
11.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1통	300원	식품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유지

【참고사항2】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라 제증명,유료
검사 등 비급여 단가에 대한 금액변경

□ 감염성 진단서

구분	검사항목	분류 번호	의료 수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70%	금액	2015년 금액 (십원단위 절사)	기존	변경후	
건강진단서	감염성	진찰료	AA254	9,830	6881	14,472	14,400 (14,472)	18,130	14,400
		흉부(Chest PA)	G2101	5,820	4074				
		장티푸스	B4040	2,970	2079				
		매독반응검사	C4600	1,340	938				
		발급료			500				

□ 골밀도 검사(허리,고관절)

검사항목	분류번호	의료수가	건강보험요양 급여 기준70%	2015년 금액 (십원단위 절사)	기존	변경후
골밀도검사	다334가(2)	38,820	27,174	27,100 (27,174)	15,000	27,100

□ 흉부촬영

검사항목	분류번호	의료수가	건강보험요양 급여 기준70%	2015년 금액 (십원단위 절사)	기존	변경후
흉부직촬	다121가	5,820	4,074	4,000 (4,074)	4,950	4,000

□ 방사선영상CD교부 수수료

검사항목	분류번호	의료수가	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70%	2015년 금액 (십원단위 절사)	기존	변경후
방사선영상CD교부 수수료	너9	4,000	2,800	2,800	1,500	2,800

□ B형간염항체 검사

검사항목	분류번호	의료수가	건강보험요양 급여 기준70%	2015년 금액 (십원단위절사)	기존	변경후
B형간염 표면항원(일반)	나480가(1)	2,610	1,827	3,800 (3,871)	6,310	3,800
B형간염 표면항체(일반)	나481가	2,920	2,044			

□ 생화학검사

검사항목		분류번호	의료수가	건강보험요양 급여 기준70%	2015년 금액 (십원단위 절사)	기존	변경후
간기능검사	Total protein (총단백)	나220	1,290	903	7,600 (7,658)	4,640	24,200
	Albumin (알부민)	나221	1,640	1,148			
	SGOT(지오티)	나257	1,720	1,204			
	SGPT(지피티)	나258	1,680	1,176			
	ALP(알카리 포스포타제)	나260나	1,470	1,029			
	r-GTP	나271	3,140	2,198			
신장기능 검사	BUN (요소질소)	나373	1,570	1,099	2,800 (2,870)	4,640	
	Creatinine (크레아티닌)	나375	1,220	854			
	Uric acid (요소)	나378	1,310	917			
고지혈증 검사	Total Cholesterol (총콜레스테롤)	나241가	1,610	1,127	12,100 (12,180)	4,640	
	TG(중성지방)	나244다	3,430	2,401			
	HDL-cholesterol	나242	5,880	4,116			
	LDL-cholesterol	나243	6,480	4,536			
혈당검사	Glucose(정량)	나371나	1,270	889	880	4,640	
빈혈검사	Hemoglobin (혈색소)	나101	1,240	868	860	4,640	

□ 뇨화학검사

검사항목	분류번호	의료수가	건강보험요양 급여 기준70%	2015년 금액 (십원단위 절사)	기존	변경후
뇨 일반검사10종 ,요검정	나3	2,070	1,449	1,400	4,640	1,400

□ 면역혈청검사

검사항목	분류번호	의료수가	건강보험요양 급여 기준70%	2015년 금액 (십원단위 절사)	기존	변경후
B형간염 표면항원(일반)	나480가(1)	2,610	1,827	7,400 (7,406)	4,640	7,400
B형간염 표면항체(일반)	나481가	2,920	2,044			
HIV항체검사	나471가	3,710	2,597			
매독반응검사	나460	1,340	938			

【참고사항3】

※ 타구비교 자료 : 14년도 인천시 남동구 종합감사결과 이후 조례 개정된 구만 비교함(동구,남구,남동구,부평구)

구별 수수료 현황

□ 증명 발급 수수료

(단위:원)

현 행				개정(안)		
구 분	서구	부평구,동구, 서구, 남구	남동구	구 분	요율액	
1. 근로자 건강진단서	500	좌동	500	1. 일반진단서	500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500			2. 특별진단서		2,000
3. 일반진단서	500			3. 기발급 증명서 재발급		500
4. 특별진단서	2,000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 중)		1,500
5. 사체검안서	5,000			5.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3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2,000					
7. 사망진단서	500					
8.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500					
9.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300					
10. 1통 초과 발급	100					

□ 진단서(4종)

(단위:원)

구분	서구		남동구	부평구	남구	동구
	개정전	개정후				
이미용사	-	-	12,600	14,500	23,500 (간염검사포함)	16,010
조리사	-	-	12,600	16,600	23,500	16,010
감염성	18,130	14,400	-	14,000	19,890	16,010
B형간염포함	-	-	12,600	17,800	25,260	18,010

※ 남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100% 징수

남동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50%,부평구는 70%, 동구는 약 72%

☞ 우리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70% 징수

골밀도 검사

(단위:원)

구분	서구		남동구	부평구	남구	동구
	개정전	개정후				
수수료 현황	15,000	27,100 (3부위)	18,800	26,300	-	-

※ 우리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70% 징수

남동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50% 징수, 부평구는 70%
서구 정액제로 징수

 방사선영상CD사본

(단위:원)

구분	서구		남동구	부평구	남구	동구
	변경전	변경후				
방사선영상 CD교부수수료	1,500	2,800	원본필름대여 (무료)	3,000	원본필름대여 (무료)	원본필름대여 (무료)

※ 우리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70% 징수

남동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50% 징수, 부평구는 70%
남동구, 남구, 동구는 무료

 치석제거술

(단위:원)

구분	서구	남동구	부평구	남구	동구
치석제거술 (스케일링)	30,000	30,000	18,800	30,000	30,000

※우리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기준임

부평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70%

 치면열구전색

(단위:원)

구분	서구	남동구	부평구	남구	동구	비고
치면열구전색 (치아홈메우기)	5,000	5,000	5,000	5,000	5,000	1치아당 (건강보험대상 치아제외)

※인천시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기준임
 불소도포

(단위:원)

구분	서구	남동구	부평구	남구	동구	비고
불소도포	5,000	5,000	5,000	5,000	5,000	전체치아

※인천시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기준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24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1. 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16.1.1.시행)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부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 1. 위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 대표이사 주민번호를 대표이사 생년월일로 개정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 560-4901, 팩스 560-2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16.1.1.시행)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일부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두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6조 1. 위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 대표이사 주민번호를 대표이사 생년월일로 개정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은”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구 청장”을 “그 밖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기일내에”를 “지정기일 내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일전에”를 “30일 전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5일전에”를 “15일 전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용중에”를 “사용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원상복구전에”를 “원상복구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철거일로부터 20일이내”를 “철거일

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구시설관리공단”을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각호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년”을 “해당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서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검토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2항에 따라”로, “지정기일내에”를 “지정기일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협약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30일전까지”를 “3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및 제2항에 따라”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2월전에”를 “2개월 전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15%”를 “15퍼센트”로 한다.

제1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서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을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위탁신청서

1. 시설명 :

2. 신청자 기재사항

법인명		법인구분	시설(), 지원()
허가기관		허가일자	
허가번호		법인목적사업	
대표이사 성명		대표이사 생년월일	
대표이사 주소			
법인 현소재지			
재정상태	동산 : 원, 부동산 : 원		
사회복지사업 실적	노인복지(○년○월), 영유아보육(○년○월), 아동복지(○년○월), 장애인복지(○년○월) 모자복지(○년○월), 정신보건(○년○월), 부랑아복지(○년○월), 사회복지관(○년○월)		

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해당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시설(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위와 같이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시행에</u> ----- ----- -----.</p>
<p>제2조(복지시설운영) <u>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u>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u>각호의</u> 복지시설을 운영한다.</p> <p>1. 2. (생략)</p> <p>3. <u>기타 구청장이</u>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p>	<p>제2조(복지시설운영) <u>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u>은 ----- ----- ----- <u>제2조에 따른</u> ----- ----- <u>각 호의</u>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p>
<p>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구청은 조례 제4조에 <u>의하여</u> 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의 부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사용자는 사용료를 <u>지정기일</u> 내에 구금고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u>제1호</u></p>	<p>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 <u>따라</u> ----- ----- -----.</p> <p>②----- <u>지정기일</u> ----- ----- -----.</p>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①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사업 실적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서구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적격법인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협약등)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내에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협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자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규정을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연장 및 해지)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 제3조-----

 ----- 검토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
 ②----- 제1항에 따라 -----

 ----- .

제8조(위탁협약등) ①제7조제2항에 따라 -----
 ----- 지정기일 내에 -----
 ----- .
 ②----- 협약일부터 30일 이내-----
 ----- .

제9조(연장 및 해지) ①----- 제3조에 따라 -----
 ----- 30일 전까지 -----
 ----- .
 ②----- 제6조에 따라 -----

탁자가 수탁해지를 희망할 경우 위탁해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 의견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예정 2월전에 수탁자에게 위탁협약해지통지(별지 제6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임대) ①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 또는 장비를 임대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부 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임대기간은 구청장과 협약한 수탁기간 범위내로 하여야 하며, 사용료 산정과 사용료 납기

-----.

③----- 및 제2항에 따라 -----

----- 30일 이내-----
-----.

④----- 제7조에 따라 -----

----- 2개월 전에 -----
-----.

제10조(운영 및 임대) ①-----

-----.

----- 범
위-----
-----.

②----- 제1항에 따라 -----

-----.

③----- 범위-----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임대기간 연장 허가는 반드시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는 납기 익일부터 일할계산하되, 납부 전일까지 연리 15%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서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따른 -----

----- 15퍼
센트-----.

제11조(준용) -----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

관계법령 발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27호

2016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 제9조 4항 및 인천광역시서구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명)

구 분	총 수	내국인수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수 (영주자격자)	투표청구 주민수 (청구인수비율)	비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395,118	393,922	654	542	32,927(1/12)	

- ※ 내국인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 2015. 12. 31일 현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 ※ 외국인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

2016년 1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29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와 19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6년 1월 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단위:명]

19세이상의 주민수			19세이상의 주민총수 ④ (①+②+③)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④×1/40)
내 국 인 (선거권없는자제외) ①	재외국민 ②	외 국 인 (영주권 취득후 3년 경과자) ③		
393,922	654	542	395,118	9,878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30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6년 1월 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구청장>**

(단위:명)

동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비 고
	계	19세이상주민	등록 외국인 (19세이상)			
계	394,464	393,922	542	59,170		
검암경서동	34,806	34,759	47		3,945	
연희동	37,027	36,986	41		3,945	
청라1동	21,402	21,380	22		3,211	
청라2동	36,467	36,433	34		5,471	
가정1동	13,548	13,525	23		2,033	
가정2동	6,356	6,350	6		954	
가정3동	9,402	9,392	10		1,411	
신현원창동	22,378	22,360	18		3,357	
석남1동	19,657	19,610	47		2,949	
석남2동	13,223	13,189	34		1,984	
석남3동	14,345	14,323	22		2,152	
가좌1동	10,822	10,779	43		1,624	
가좌2동	18,336	18,328	8		2,751	
가좌3동	16,011	15,994	17		2,402	
가좌4동	7,637	7,622	15		1,146	
검단1동	22,590	22,535	55		3,389	
검단2동	18,021	18,008	13		2,704	
검단3동	17,678	17,664	14		2,652	
검단4동	36,177	36,140	37		3,945	
검단5동	18,581	18,545	36		2,788	

※ 산정된 서명인 수 57,931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7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구의원>

(단위:명)

구별	선거구별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계	19세이상주민	등록외국인		
서구	가선거구	계	113,047	112,892	155	22,610	
		검단1동	22,590	22,535	55		1,131
		검단2동	18,021	18,008	13		1,131
		검단3동	17,678	17,664	14		1,131
		검단4동	36,177	36,140	37		1,131
		검단5동	18,581	18,545	36		1,131
	나선거구	계	92,675	92,572	103	18,535	
		검암경서동	34,806	34,759	47		927
		청라1동	21,402	21,380	22		927
		청라2동	36,467	36,433	34		927
	다선거구	계	88,711	88,613	98	17,743	
		연희동	37,027	36,986	41		888
		가정1동	13,548	13,525	23		888
		가정2동	6,356	6,350	6		888
		가정3동	9,402	9,392	10		888
		신현원창동	22,378	22,360	18		888
	라선거구	계	47,225	47,122	103	9,445	
		석남1동	19,657	19,610	47		473
		석남2동	13,223	13,189	34		473
		석남3동	14,345	14,323	22		473
	마선거구	계	52,806	52,723	83	10,562	
		가좌1동	10,822	10,779	43		529
		가좌2동	18,336	18,328	8		529
		가좌3동	16,011	15,994	17		529
		가좌4동	7,637	7,622	15		529

※ 각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 각 선거구별 1/3 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32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용 비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1매당) : 60원 ○ A4라벨용지(1매당) :19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제공 = (570원×CD개수)+(25원×면수)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49호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을 위반한 개인택시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0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 고 대 상

가. 사전통지

연번	등록번호	소유자	주 소	부과 금액	위반항목	반송 사유	비고
1	인천30바9228	신*명	인천광역시 서구 명가골로8번길 4, 나동 403호(석남동,경성주택)	과태료 20만원	부당요금	폐문부재	

2. 공 고 기 간 : 2016.01.08 ~ 2016.01.28까지(20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택시발전법」 제23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주에게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나. 공고 대상자는 기한 내에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전부과 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 다. 택시 불편신고 접수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공시송달공고기간 내에 자진 납부의사가 있는 경우 20% 감경처리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어 감경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5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5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제1단계가 2015년 12월 31일 준공됨에 따라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법정동 경계조정 신청협의를 있으며,
- 현행 법정동 경계 존치시 관할구역인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간의 경계가 불명확하며, 공동 주택 입주시 1개의 필지에 2개 이상의 법정동이 혼재하여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 경계 조정 요구됨.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조문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 규정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연희동,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의 관할구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2,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제1단계가 2015년 12월 31일 준공됨에 따라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법정동 경계조정 신청협의를 있으며,
- 현행 법정동 경계 존치시 관할구역인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간의 경계가 불명확하며, 공동 주택 입주시 1개의 필지에 2개 이상의 법정동이 혼재하여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 경계 조정 요구됨.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조문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 규정 정비 필요.

3. 주요내용

-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연희동,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의 관할구역 추가

4.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의2”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서 구	백석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동 일원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백석동 80, 80-11, 80-16, 80-52, 81-10, 산33-6~7, 산34-2, 산34-7~9, 산34-11~12
	시천동	시천동 일원
	검암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암동 일원 - 2003. 7.29 경서동에서 일부경정 편입지역 포함 - 경서동 1, 1-1, 1-3~5, 1-21, 1-26~29, 1-31, 1-33, 1-47, 1-50, 1-55~64, 2-4~5, 2-7, 2-9~12, 3-46~47, 5-37~39, 6-1~3, 6-5~14, 6-18~21, 6-23~37, 7-2~5, 8-4~5, 382-3, 산1-1, 산18-8 - 2003. 7.29 공촌동에서 일부경정 편입지역 포함 - 공촌동 47-5~6, 49, 49-6, 50, 50-1~3, 51-1~11, 5-13~14, 51-17~39, 51-41~42, 51-44~49, 51-51, 51-53~8, 51-60~67, 51~71, 51-75~87, 51-95~97, 51-99~101, 51-104, 51-110~114, 52-1~16, 53-1~9, 54-1~4, 54-6~9, 55-1~7, 55-10, 55-12~13, 56, 56-1, 56-3~5, 57, 57-1~12, 57-15~16, 58, 58-1, 293-2~3, 293-5~7, 294-1~3, 산 36-11~12 - 2003. 7.29 연희동에서 일부경정 편입지역 포함 - 연희동 73-1, 73-5, 555-15~17
	경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서동 일원 - 2003.7.29 검암동으로 일부경정 편입지역 제외 경서동 1, 1-1, 1-3~5, 1-21, 1-26~29, 1-31, 1-33, 1-47, 1-50, 1-55~64, 2-4, ~5, 2-7, 2-9~12, 3-46~47, 5-37~39, 6-1~3, 6-5~14, 6-18~21, 6-23~37, 7-2~5, 8-4~5, 382-3, 산1-1, 산18-8 - 2003.7.29 연희동에서 일부경정 편입지역 포함(연희동 555-18) - 연희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연희동 562-1, 563, 563-2, 595-2, 596, 626 - 연희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경서동 625-2, 671-1 - 원창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원창동 398, 398-1~8, 398-10~16, 398-42, 398-60~70, 402, 402-1, 402-21~32, 403-36~42, 430-1, 431-4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공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촌동 일원 - 2003. 7.29 검암동으로 일부경정 편입지역 제외 공촌동 47-5~6, 49, 49-6, 50, 50-1~13, 51-1~11, 51-13~14, 51-17~39, 51-41~42, 51-44~49, 51-51, 51-53~58, 51-60~67, 51-71, 51-75~87, 51-95~97, 51-99~101, 51-104, 51-110~114, 52-1~16, 53-1~9, 54-1~4, 54-6~9, 55-1~7, 55-10, 55-12~13, 56, 56-1, 56-3~5, 57, 57-1~12, 57-15~16, 58, 58-1, 293-2~3, 29-5~7, 294-1~3, 산 36-11~12
	연희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희동 일원 - 2003.7.29 검암동으로 일부경정 편입지역 제외 연희동 73-1, 73-5, 555-15~17 - 2003.7.29 경서동으로 일부경정 편입지역 제외 연희동 555-18 - 경서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경서동 625-2, 671-1 - 경서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연희동 562-1, 563, 563-2, 595-2, 596, 626 - 가정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가정동 58-37, 58-49, 58-50~51, 58-54, 58-58, 69-1, 69-3, 69-8, 69-11, 71-130, 71-141~142, 71-161, 71-164, 71-166, 71-168, 71-170, 71-172, 71-175, 71-186, 71-189~190, 71-192~196, 71-200~206, 120-123, 120-126, 120-128, 468, 488-22, 산 76, 산76-1~3, 산77-2, 산77-8~10, 산77-12~15, 58-52, 58-56, 69-2, 69-6, 71-162~163, 71-167, 469-2, 산77-11 - 원창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원창동 2-1, 2-4, 2-13, 2-27~30, 2-42~43, 2-45, 2-54, 2-56~57, 2-59~61, 2-68~73, 198, 198-1, 산1, 산1-2, 산3, 산3-2, 산4-6, 2, 4-36, 197-4, 산1-5, 산1-7, 산2-3, 산3-1, 산4-5, 산4-11

	심곡동	심곡동 일원
	가정동	<p>가정동 일원</p> <p>- 신현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가정동 120-13, 120-22~26, 120-35, 120-46~47, 120-69~71, 120-74~76, 120-78, 120-84, 120-90, 120-92, 120-95, 120-98, 120-100, 120-102, 120-104, 120-107, 120-132, 120-134, 120-144, 120-146, 120-149~152, 120-155, 120-157~160, 120-163 , 120-173, 120-176~180, 120-182~183, 120-185~190, 203-2, 204-5~6, 204-8~11, 204-14~15, 204-43, 204-64~67, 204-72~75, 204-87~88, 204-91, 204-104, 204-112, 204-114~115, 204-138~139, 204-141~142, 204-145~148, 204-150, 204-152~154, 204-156~159, 204-161~162, 204-164~168, 204-172~187, 469-5~9, 469-12~13, 470, 572-1, 593-5, 120-91, 120-106, 120-194~197, 203-24~25, 204-69, 204-99, 204-188, 469-15~17</p> <p>- 연희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가정동 58-37, 58-49, 58-50~51, 58-54, 58-58, 69-1, 69-3, 69-8, 69-11, 71-130, 71-141~142, 71-161, 71-164, 71-166, 71-168, 71-170, 71-172, 71-175, 71-186, 71-189~190, 71-192~196, 71-200~206, 120-123, 120-126, 120-128, 468, 488-22, 산76, 산76-1~3, 산77-2, 산77-8~10, 산77-12~15, 58-52, 58-56, 69-2, 69-6, 71-162~163, 71-167, 469-2, 산77-11</p> <p>- 원창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원창동 197-3, 2-64, 2-76, 197-2, 197-8</p>
	신현동	<p>신현동 일원</p> <p>- 가정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가정동 120-13, 120-22~26, 120-35, 120-46~47, 120-69~71, 120-74~76, 120-78, 120-84, 120-90, 120-92, 120-95, 120-98, 120-100, 120-102, 120-104, 120-107, 120-132, 120-134, 120-144, 120-146, 120-149~152, 120-155, 120-157~160, 120-163 ,120-173, 120-176~180, 120-182~183, 120-185~190, 203-2, 204-5~6, 204-8~11, 204-14~15, 204-43, 204-64~67, 204-72~75, 204-87~88, 204-91, 204-104, 204-112, 204-114~115, 204-124~131, 204-138~139, 204-141~142, 204-145~148, 204-150, 204-152~154, 204-156~159, 204-161~162, 204-164~168, 204-172~187, 469-5~9, 469-12~13, 470,</p>

	<p>572-1, 593-5, 120-91, 120-106, 120-194~197, 203-24~25, 204-69, 204-99, 204-188, 469-15~17</p> <p>- 원창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p> <p>원창동 1, 1-1~23, 2-19, 2-23~24, 2-32~34, 2-37, 2-39~41, 2-62~63, 2-65~67, 2-74~75, 67, 67-5, 68, 68-3, 197-1, 197-5~6, 산4-2, 산4-4, 산4-78, 산4-10, 산4-12, 산5-12, 산5-57, 2-77, 2-79, 65-4, 69-5, 197-7, 197-9, 산4-15, 산4-18, 산5-8, 산6-4, 산9-20, 산18</p>
석남동	석남동 일원
원창동	<p>- 원창동 일원</p> <p>- 경서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p> <p>원창동 398, 398-1~8, 398-10~16, 398-42, 398-60~70, 402, 402-1, 402-21~32, 403-36~42, 430-1, 431-4</p> <p>- 신현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p> <p>원창동 1, 1-1~23, 2-19, 2-23~24, 2-32~34, 2-37, 2-39~41, 2-62~63, 2-65~67, 2-74~75, 67, 67-5, 68, 68-3, 197-1, 197-5~6, 산4-2, 산4-4, 산4-78, 산4-10, 산4-12, 산5-12, 산5-57, 2-77, 2-79, 65-4, 69-5, 197-7, 197-9, 산4-15, 산4-18, 산5-8, 산6-4, 산9-20, 산18</p> <p>- 연희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p> <p>원창동 2-1, 2-4, 2-13, 2-27~30, 2-42~43, 2-45, 2-54, 2-56~57, 2-59~61, 2-68~73, 198, 198-1, 산1, 산1-2, 산3, 산3-2, 산4-6, 2, 4-36, 197-4, 산1-5, 산1-7, 산2-3, 산3-1, 산4-5, 산4-11</p> <p>- 가정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p> <p>원창동 197-3, 2-64, 2-76, 197-2, 197-8</p>
가좌동	가좌동 일원
마전동	<p>- 마전동 일원</p> <p>- 왕길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p> <p>마전동 625, 660-2, 660-44, 661-2~3, 662-5, 663-1~4, 695-2~7, 696-2~6, 696-8~10, 698-7, 698-22, 698-31, 699-14, 735-5, 740-3, 산160-1, 산156-2~3, 산157-4, 산158-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길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왕길동 219-18 - 당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당하동 925-21~22, 925-24, 1012-1, 1015-3, 1018-1 - 불로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불로동 725-8~9, 751-1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마전동 498, 498-1, 499-2, 541-1~2, 545-14, 545-18~24, 546-7 547, 547-1~11, 547-13~16, 548, 548-1, 549, 550-1~5, 553-1 555-1~2, 556, 556-1~2, 557, 558, 559-8~10, 559-12~14, 559-18, 559-23, 559-26~27, 559-34, 559-42, 582-10~11, 582-18 582-21~22, 582-24, 582-26, 582-30, 609, 609-1~9, 610, 615, 615-1, 616-2, 616-4~5, 617-3~4, 617-6~7, 710-1, 713-10, 715~717, 산170-18~19, 산171-1, 산171-3~4, 산171-7, 산172 산172-1~3, 산181-2~4, 산181-10~13, 산181-16, 산182, 산183-1~2, 산184-1~2, 산185-1~3
당하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하동 일원 - 마전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당하동 925-21~22, 925-24, 1012-1, 1015-3, 1018-1 - 마전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마전동 498, 498-1, 499-2, 541-1~2, 545-14, 545-18~24, 546-7 547, 547-1~11, 547-13~16, 548, 548-1, 549, 550-1~5, 553-1 555-1~2, 556, 556-1~2, 557, 558, 559-8~10, 559-12~14, 559-18, 559-23, 559-26~27, 559-34, 559-42, 582-10~11, 582-18 582-21~22, 582-24, 582-26, 582-30, 609, 609-1~9, 610, 615, 615-1, 616-2, 616-4~5, 617-3~4, 617-6~7, 710-1, 713-10, 715~717, 산170-18~19, 산171-1, 산171-3~4, 산171-7, 산172 산172-1~3, 산181-2~4, 산181-10~13, 산181-16, 산182, 산183-1~2, 산184-1~2, 산185-1~3 - 백석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백석동 80, 80-11, 80-16, 80-52, 81-10, 산33-6~7, 산34-2, 산34-7~9, 산34-11~12

원당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당동 일원 - 당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당하동 3-2, 3-3, 4-1, 5-3, 6-1, 7-1, 7-2, 8, 8-2, 8-3, 9, 10-1, 10-2, 13-2, 14-1, 22-1, 22-3, 22-4, 22-5, 22-8, 22-11, 22-14, 22-18, 22-20, 22-23, 22-24, 23-1, 23-3, 24, 26, 26-2, 27, 31, 32-1, 32-2, 32-3, 35, 36, 36-1, 36-4, 981-1, 982, 983, 산109, 산110, 산110-2, 산110-3, 산110-4, 산111-1, 산112, 산112-2, 산112-3, 산112-4, 산112-5, 산113-4, 산116-2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원당동 562, 778
불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로동 일원 - 마전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불로동 725-8~9, 751-1
대곡동	대곡동 일원
금곡동	금곡동 일원
오류동	오류동 일원
왕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길동 일원 - 마전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마전동 625, 660-2, 660-44, 661-2~3, 662-5, 663-1~4, 695-2~7, 696-2~6, 696-8~10, 698-7, 698-22, 698-31, 699-14, 735-5, 740-3, 산160-1, 산156-2~3, 산157-4, 산158-5 - 마전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왕길동 219-1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제4조의2</u> ----- -----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4.11.19.]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 면 적 : 1,325,746.9㎡ (1단계 1,099,531.5㎡)
- 수용인구 : 25,116인(189인/ha)
- 세 대 수 : 9,660세대(2.60인/가구)
- 사업기간 : 2006.11.03. ~ 2015.12.31. [1단계]
2006.11.03. ~ 2016.12.31. [2단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루원사업단)
- 사 업 비 : 9,022억원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51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인한 주소표기 방법 변경 및 「청라1동 주민센터 및 청라2동 주민센터」의 신축 개칭으로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구청 및 동 소재지(제2조 관련)」 개정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2,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인한 주소표기 방법 변경 및 「청라1동 주민센터 및 청라2동 주민센터」의 신축 개청으로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구청 및 동 소재지(제2조 관련)」 개정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 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
연 회 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회동)	
청라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연회동)	
청라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경서동)	
가정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20(가정동)	
가정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17(가정동)	
가정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석남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석남동)	
석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 4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단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마전동)	
검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검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검단 4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검단 5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오류동)	

〔별표〕

구청 및 동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서 구 청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검암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연 회 동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 1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연희동)
청라 2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경서동)
가정 1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20(가정동)
가정 2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17(가정동)
가정 3동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석남 1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석남동)
석남 2동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3동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 2동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 3동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 4동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단 1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마전동)
검단 2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검단 3동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월당동)
검단 4동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검단 5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오류동)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 - 54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의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안 제7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 청라지역 봉투 제작시 자동집하시설 인식 스티커 추가 부착 (안 제1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지원방법 개정 (안 제15조)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청결유지 조치 관련 사항 개정
(안 제9조2제2항)
-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7조)
-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8조부터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등으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별지 제3,4,7,8호 서식)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552) 또는 Fax(560-276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 자료

- 개 정 안 : “별지 참조”
-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관계 법령 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폐기물 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규칙 10조”를 “시행규칙 제18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익일06:00”를 “24:00”로, “배출하여야 한다.”를 “배출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투입구에 수시로 배출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가정사업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50ℓ:13kg이하, 100ℓ:25kg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로 제한 한다.

제7조제2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호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을 “따른조치

명령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쓰레기 제거조치
2. 주변환경 원상회복 조치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9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자동집하시설에 배출되는 쓰레기봉투는 인식 스티커를 추가 부착하여 제작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거”를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항 제2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

제16조 삼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서구로 전입하는 가구에 한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인증스티커를 받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중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를 “과태료는 법 시행령 제34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7은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8은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제10조 관련)

봉투용량(ℓ)	봉투규격(cm) (가로×세로)	종 류
5	26×46.5	일반용봉투(가연성)
10	33×56.5 36×53.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20	42×69.5 45×65.3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30	48×78.5	가정사업계용봉투
50	56×91.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공공용봉투
60	50×97	가정사업계용봉투
100	71×113.5	일반용봉투(가연성) 공공용봉투
125	80×120	가정사업계용봉투

※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 봉투제작 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cm}$$

[별표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폐종이류, 나무조각류, 상품포장재 등 가연성(불에 타는)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에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 ~ 24:00)에 배출하시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투입구에 배출하십시오.
4. 폐냉장고,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재활용품은 화요일 20:00 ~ 24:00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391 ~ 5)

서구시설관리공단(☎580-1180 ~ 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별표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용 -

1.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폐각류, 폐전구, 깨진그릇 등 불연성 (불에 타지 않는)쓰레기는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불연성 쓰레기를 버릴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 (20:00 ~ 24:00)에 배출하십시오.
4. 폐냉장고,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 하여야 합니다.
5. 재활용품은 화요일 20:00 ~ 24:00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리배출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391 ~ 5)

서구시설관리공단(☎580-1180 ~ 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별표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

- 가정사업계용 -

1. 이 봉투는 ○ ○ ○ 또는 ○ ○ ○에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처리대상 쓰레기 (가정에서 발생된 사업계 쓰레기 중 가연성쓰레기)
: 고무, 피혁, 섬유, 폐도배지, 양탄자, 보온재, 폐목재, 오폐수 등
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에 버리지 않는 경우 일체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4.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391 ~ 5)

서구시설관리공단(☎580-1180 ~ 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별표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재사용 종량제봉투() -

1. 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종량제봉투(불에 타는 쓰레기용)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2.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391 ~ 5)

서구시설관리공단(☎580-1180 ~ 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별표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공공용쓰레기봉투(ℓ)

1.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과**(☎560-4391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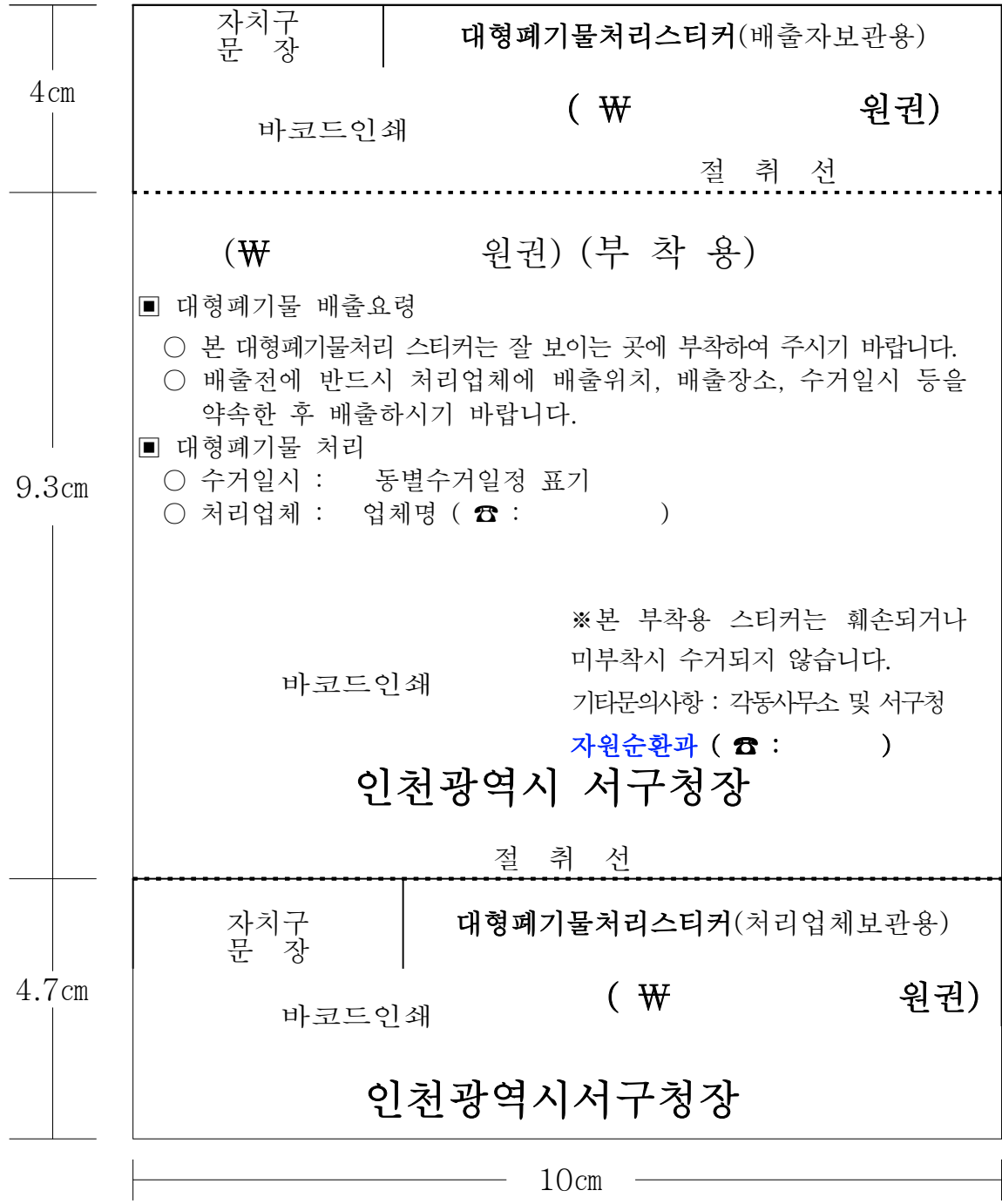
서구시설관리공단(☎580-1180 ~ 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별표 5]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제11조 관련)



※ 종류는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4종으로 1,000원권은 파랑색 바탕에 흰글씨, 3,000원권은 초록색 바탕에 흰글씨, 5,000원권은 주황색 바탕에 흰글씨, 10,000원권은 붉은색 바탕에 흰글씨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년월일까지		납부장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월일까지		납부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²)

(을)							(피처분자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년월일까지		납부장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월일까지		납부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p>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 나 지정된 기한 및 장소에 납부하지 않습니다.</p> <p>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합니다.</p> <p>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p>								
인천 광역 시 서 구 청 장 (인)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²)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년월일까지		납부장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월일까지		납부장소		
<p>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p> <p>년 월 일</p> <p>수납은행 :</p>								
수납일부인		인천 광역 시 서 구 청 장 (인)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²)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 행 번 호	제 호	회 계 년 도		세 입 과 목		계 좌 번 호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 태 료 금 액		원	납 부 기 간	년 월 일 까지		납 부 장 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34g/m²)

(무)						(인천광역시서구청통보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필 통 지 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 계 년 도		세 입 과 목		계 좌 번 호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 태 료 금 액		원	납 부 기 간	년 월 일 까지		납 부 장 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귀 하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34g/m²)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			
⑤위 반 사 항			
⑥과 태 료 금 액		⑦당초납부기일	
<p>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p>			

(별지 제7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미 의 신 청 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③주 소		
	④부 과 기 관	⑥납부통지서번호	
	⑤고지발은일자	⑦과 태 료 금 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p>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미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귀하</p>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	①성 명		②생년월일	
에대한이의	③주 소			
제 기 자				
과 태 료	④고지일자		⑤과 태 료 금 액	
처 분내 역	⑥부과기간		⑦이 의 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하며,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이란 별표 10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6. (생략)

7.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은 제외한다.

②이 조는 법 제17조 및 시행

 ----- 따른 -----

5.·6. (현행과 같음)

7. -----

 ----- 따른 -----

8.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 제15조에 따른 -----

②-----

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③ (생략)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해당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법 제6조-----

-----.

②----- 둘 이상-----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 따른 -----

-----.

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20:00부터 익일06:00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 6.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출용기·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배출자로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

-----24:00-----
-----배출하
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투
입구에 수시로 배출한다. 이
때,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
투(가정사업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50ℓ:13kg이하, 100ℓ:
25kg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로 제한한다.

2. ~ 6. (현행과 같음)

② -----
-----다른-----

-----.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 다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9조

제9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

-----1개월-----

-----1개월-----
-----.

② ----- 따른 조치명령은 -----
-----.

1. 쓰레기 제거조치

2. 주변환경 원상회복 조치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삭 제>

제9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

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 ~ ④ (생략)

⑤구청장은 가내수공업등 소량의 폐기물 처리 및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용 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 ③ (생략)

④제10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

-----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따른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따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별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생략)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스티커 판매 가격으로 하며 주민 필요에 따라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0에서 정한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3. (생략)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7에 의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별표 7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구청장은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별제14조제5항-----

1. (현행과 같음)
2. -----
 ----- 따른 -----

3. (현행과 같음)
 ②----- 따른 -----

 ----- 따른다. -----

③----- 따른 -----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생략)

②·③ (생략)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등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또는 「자연공원법」-----.)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삭 제>

<삭 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내의 수급자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생략)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봉투판매소 또는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1. (현행 제3호와 같음)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

----- 또한, 서구로 전입하는 가구에 한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인증스티커를 받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법 시행령 제34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제18조(의견제출)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된다.

제19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삭 제>

<삭 제>

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독촉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

<삭 제>

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하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

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

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

<삭 제>

<삭 제>

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과태료 귀속) 수납되는 과
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삭 제>

제2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삭 제>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삭 제>

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참고자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